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863

발의연월일: 2024. 8. 14.

발 의 자:정성국·주진우·김대식

김용태 · 이헌승 · 조경태

조정훈 • 곽규택 • 백종헌

서지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생교육단체와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특례를 두어 평생교육시설이나 장학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평생학습 활성화 및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 강화, 장학금 수혜자 수 확대로 장학법인의 공익성 증대를 위해서는 지방세 특례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평생교육단체와 장학법인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평생학습활성화와 장학법인의 공익성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3조제3항,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제45조제1항 및 제2항).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5조제1항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제43조(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①・② (생 략)	면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평생교육단체가 2020년 1월	③
1일부터 <u>2024년 12월 31일</u> 까지	2027년 12월 31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서는 취득세를, 같은 기간에 취	
득한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	
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	
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 ①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	
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	

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각각 감면한다.

- 1. (생략)
- 2.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
 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
 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 나. (생 략)

-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로서 「평생교육법」 제31조제 4항에 따라 전공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이하 이 조에서 "전공대학"이 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 제한다.
- 1. ~ 3. (생략)
- ③ ~ ⑤ (생 략)
- 제45조(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단체가 학술연구사 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

1. (현행과 같음)
2 <u>2027년</u>
12월 31일
가.・나. (현행과 같음)
②
<u>2027년 12월 31일</u>
,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5조(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제40조(약물단제 및 정역립인에 대한 감면) ①
대안 김인/ U

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 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학술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 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제45조의2에 따른 단체는 제외한다.

②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 학법인(이하 이 조에서 "장학 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 일까지 감면한다.

1. · 2. (생략)

③ (생 략)

<u>2027년 12월 31일</u>
②
<u>2027년 12월 31</u>
일
1.•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